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7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
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
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
기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
기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23명(4급 2명)”을 “24명(4급 3명)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
기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
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1의2, 별표 2, 별표 2의2, 별표 5, 별표 6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(앞단 생략)

일반직 계	229
고위공무원단	8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	3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4
부이사관·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1
행정사무관	63
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6
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1
행정주사	21
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	1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24
운전주사	1
행정주사보	7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7
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5
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운전서기보	1
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12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
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(앞단 생략)

일반직 계	229
고위공무원단	8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	3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4
부이사관·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1
행정사무관	67
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6
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1
행정주사	17
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	1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25
운전주사	1
행정주사보	5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8
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5
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운전서기보	1
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12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
[별표 2]

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(제19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70
일반직 계	62
고위공무원단	1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
행정사무관	10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3
검찰사무관	3
행정주사	4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0
검찰주사	1
세무주사	5
관세주사	4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검찰주사보	1
세무주사보	2
관세주사보	1
기록연구사	1

경찰공무원 계	8
총경	1
경정	4
경감	3

[별표 2의2]

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(제19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70
일반직 계	62
고위공무원단	1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
행정사무관	1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3
검찰사무관	3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3
검찰주사	1
세무주사	5
관세주사	4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검찰주사보	1
세무주사보	2
관세주사보	1
기록연구사	1
경찰공무원 계	8

총 경	1
경 정	4
경 감	3

[별표 5]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(제22조제5항,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항 관련)

1. 금융혁신기획단(존속기한: 2024년 6월 30일)

총계	10
일반직 계	10
고위공무원단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5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
2. 기업구조개선과(존속기한: 2023년 10월 15일)

총계	7
일반직 계	7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	5
행정주사	1

3. 제도운영기획관(존속기한: 2023년 9월 16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고위공무원단	1

4. 가상자산검사과(존속기한: 2023년 9월 16일)

총계	9
일반직 계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4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
[별표 6]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24조 관련)

1.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4년 6월 30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
2.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9월 16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획조정관) ① (생략)	제7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 · 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,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으로,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행정인사과장) 행정인사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8조(행정인사과장) ----- 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③ (생략)	제8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 · 서민금융과 · 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⑤ ~ ⑪ (생략)	⑤ ~ ⑪ (현행과 같음)
제9조(금융정책국) ① ~ ③ (생략)	제9조(금융정책국) ① ~ ③ (현행 유지)

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·금융시장분석과·산업금융과·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⑨ (생략)

제10조(금융산업국) ① (생략)

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·보험과·중소금융과 및 전자금융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10조의2(자본시장국) ① (생략)

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·자산운용과·공정시장과·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, 자본시장과장·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

④ -----

-----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.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금융산업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-----
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자본시장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-----,

-----부이사관·과학기술서

<u>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⑦ (생략) 제12조(기획행정실)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, 실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제13조(제도운영과)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, 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으로 보한다 ② (생략) 제15조(심사분석1과)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, 과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제16조(심사분석2과)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, 과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제18조(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금융위원회와	<u>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기획행정실) ①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제도운영과) ①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심사분석1과) ①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심사분석2과) ①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8조(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----- ----- -----
--	--

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.

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(4급 2명, 4급 또는 5급 4명, 5급 12명, 6급 4명, 7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제19조(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(생략)

③ (생략)

제20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----- 10퍼센트 -----

② -----
--24명(4급 3명,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10퍼센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 삭제 >

① 「<u>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</u>」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. ② 「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제22조(금융혁신기획단) ① (생략)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⑤ (생략) 제23조(기업구조개선과)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제23조의2(제도운영기획관 등) ① (생략)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③ (생략)	<u>< 삭 제 ></u> 제22조(금융혁신기획단) ① (현행 유지) ② ----- ----- -----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3조(기업구조개선과) ① ----- -----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3조의2(제도운영기획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